

1110 정 관

제정 1971. 5.12 개정 2000. 3.21 개정 2006. 3. 8
개정 1994.12. 1 개정 2001. 3.19 개정 2007. 3. 6
개정 1997. 3. 4 개정 2002. 3.21 개정 2009. 3.19
개정 1999. 3.24 개정 2004. 3.22 개정 2010. 3.19
개정 2012. 3.30 개정 2014. 3.17 개정 2015. 3.16
개정 2016. 3.14 개정 2019. 3.18 개정 2020. 3.30
개정 2021. 3.15 개정 2022. 3.21 개정 2023. 3.20
개정 2024. 3.25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퓨처엠(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POSCO FUTURE M CO., LTD.(약호 "POSCO FUTURE M")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내화물의 제조 및 판매
1. 내화물의 시공 및 보수
1. 연소기기 제작 및 판매
1. 건설공사업
1. 공업로 설계, 제작 및 판매
1. 산업설비공사업
1. 탄소소재 제조 및 판매
1. 석회제품 제조 및 판매
1. 환경약품 제조 및 판매
1. 무기질비료 제조 및 판매
1. 대기오염방지 시설업
1. 오퍼업
1. 부동산 임대업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1. 이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1. 이차전지 소재 원료 제조 및 판매
1. 이차전지 소재 및 원료 수출입업 및 동태행업, 중개업
1. 이차전지 소재 원료 가공업
1. 환경관리 대행업
1.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출장소,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oscofuturem.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천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삭제)

제9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6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채권의 전자등록) 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혹은 대표이사에게 발행 권한이 위임된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채권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사채권의 발행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2(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9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이외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인 주주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사항에 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감소
3.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4.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5.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6.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7. 주식을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경우
8. 기타 법령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이 사 회

제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32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2(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사실이 있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정지된 후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32조의3(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 후보는 제41조의2, 제1항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 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달하고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35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는 결의로써 이사를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 간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등기된 사내이사가 수인인 경우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외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 할 때에도 대표이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이사회 의장)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36조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8조, 제4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며, 세부 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이사의 보상) 회사는 이사가 본 회사 이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소송, 제소,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본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긴급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유고시에

는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순서로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5조(비등기임원) ① 회사는 이사회에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
-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직책에 비등기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비등기임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며, 그 보수와 성과금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규정의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퇴직금 기준에 준한다.
 - ④ 비등기임원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 ⑤ 비등기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3조 단서조항을 준용 할 수 있다.
- 제46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7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 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할 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 항의 요건 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대표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48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보고 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회의 전말을 기록한 의사록과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49 조(감사위원회의 의결방법)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 40 조를 준용한다.

제 50 조(외부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록) (삭제)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제)

제 7 장 계 산

제53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결산기에 재계정을 결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로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서류
4. 연결재무제표
5. 영업보고서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잉여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6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21)

제1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본 개정정관은 제31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개정 정관의 시행 전에 선임된 이사 및 감사가 본 개정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으로 신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를 집행임원의 임기로 한다.

부 칙 (2004. 3.22)

제1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본 개정정관은 제33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8)

제1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본 개정정관은 제35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제1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본 개정정관은 제36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9)

제1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본 개정정관은 제38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9)

제1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본 개정정관은 제39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6)

제1조(본 개정 정관의 시행) 본 개정 정관 중 제10조 ②-9, 제11조 ⑥, ⑦, 제28조는 제41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나머지 조항은 2012. 4. 15.부터 각 시행한다.

부 칙(2022. 3. 21)

제1조(본 개정 정관의 시행) 본 개정 정관은 제51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0)

제1조(본 개정 정관의 시행) 본 개정 정관은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3항의 개정내용은 2023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기초한 배당 시부터 적용한다.